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 육성사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방위 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방안
5. 방위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구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기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방위산업발전협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관계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점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

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지급에 따른 비용의 소요가 예상됨 (안 제6조, 안 제10조)
-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 (안 제9조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방위산업 육성사업 및 포상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의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움
- 위원회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내 용	산출내역	금액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00천원×30명×2회	6,000천원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초과)
- 협의회 회의는 수시 개최로 연 2회로 가정

4. 작성자

신산업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충현 (054-480-6172)

소 관 부 서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김 창 열
	담 당	채 창 수
	담 당 자	김 충 현 (480-6172)